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건번호 제2019 - 57 - 296호

안 건 명 통신사 영업점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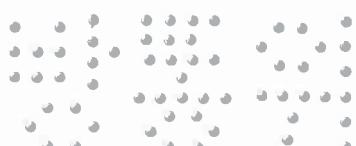
의 결 일 2019. 11. 22.

주 문

1.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대진텔레콤(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대표이사	설립일자	자본금	주요서비스	종업원 수

<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매출액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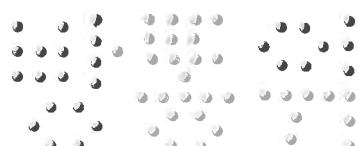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신고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하였고, 피심인에 대한 현장조사(2018. 10. 11.)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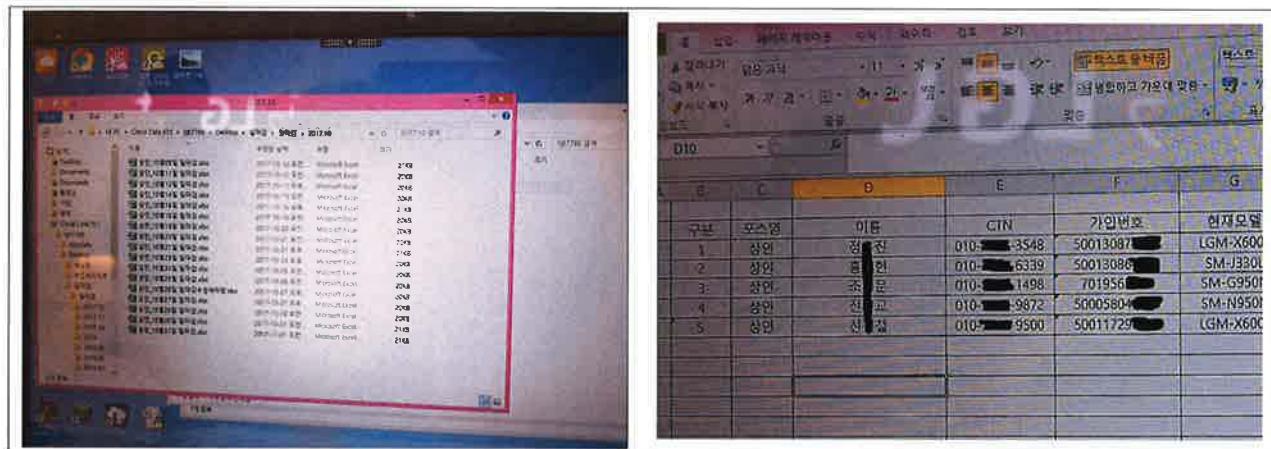
2. 행위 사실

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매장 내 컴퓨터를 통해 접속 가능한 클라우드 PC에 2017. 10. 9.부터 2018. 10. 10.까지 판매한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등) 878건을 엑셀파일 형태로 보관한 사실이 있다.

< 피심인의 클라우드 PC에 보관중인 이동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 >



다.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5. 3.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9. 5. 22.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에도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정해 파기 사유가 발생하면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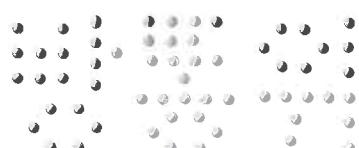
2. 위법성 판단

가.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하지 아니한 행위

피침인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처리 위탁받은 통신서비스 판매 및 가입이 완료되어 수집·이용 목적이 완료된 이용자 개인정보 878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한 것이다.

< 피침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미파기	§29①1호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 등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VI. 조사결과 수사기관 이첩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에게 동의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 자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피심인은 조사당시까지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해당되어 조사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한다.

VI. 결론



피침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침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침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침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침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9년 11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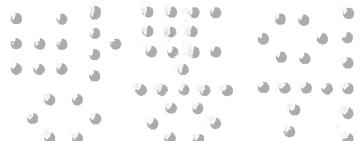
위 원 장

한 상 혁



부위원장

김 석 진



위 원

허 육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김 창 룡

